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일자리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307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공고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499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2차) 공고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663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재공고

3. 고용노동부에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과 평가 및 심층 분석 실시를 위하여 '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의 참여하는 참여인력 주민정보 및 부가정보를 수집하고자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자 정보 수집 양식은 각 기관에 별도 송부 예정

붙임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 수신처 : 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주관/참여기관 전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선임

송중빈

팀장

전결
2021. 10. 12.
오현목

협조자

시행 인공지능데이터사업2팀- (2021. 10. 12.) 접수
4503

우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http://www.nia.or.kr/](http://www.nia.or.kr/)

전화번호 053-230-4237 팩스번호 053-230-1911 / sjb7863@nia.or.kr / 비공개(7)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 '21년 추경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화)
2. 우리부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제도개선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2년에는 '20년, '21년 추경으로 추진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성과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금년 12월 추경사업(붙임1 목록 참조)의 **참여자 정보를 붙임2 양식으로 취합할 예정** **이므로** 해당 부서가 주민등록번호 등 참여자 정보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 각 부처 및 그 수행기관은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나. 각 **사업유형(부처 안) 및 담당자**(붙임1 노란색 셀에 기재), **사업 설명서**(붙임 3 양식)를 취합하여 '21.9.15(수)까지 제출(기한엄수 요망)

- 붙임 1. 추경일자리창출사업 목록(20.3차 ~ 21.2차) 1부.
2. 각 유형별 참여자 정보 제출 양식 1부.
 3. 사업 설명서 양식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교육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농촌진흥청장(기획재정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재정담당관), 문화재청장(기획재정담당관), 법제처장(기획재정담당관), 보건복지부장관(재정운용담당관), 산림청장(기획재정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여성가족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특허청장(기획재정담당관), 해양수산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환경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행정사무관 **양현우** 서기관 **이영기** 일자리정책평 전결 2021.9.9.
가과장 **이영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평가과-2415 접수 기획재정담당관-2391 (2021. 9. 9.)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여진동 581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232 팩스번호 044-202-8032 / prometius999@korea.kr / 비공개(5)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